

의안 검토 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심준홍 의원의 6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불 임 참 조
4. 검 토 의 견 : 불 임 참 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1월 31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7년 1월 22일 심준홍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사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의 상수도 수탁급수공사 신청시 선납하는 공사비를 일시불 납부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1조의 제목 “공사비의 선납”을 “공사비의 납부”로 함
(안 제11조).
- 나. 수탁공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안 제11조 제1항).
- 다. 수탁급수공사비 미납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23조 제1항).
- 라.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를 “공사비,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로 정비함(안 제45조)
- 마. 제46조 제7호 권한 위임중 “선납”을 “납부”로 함
(안 제46조 제7호)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수탁급수공사 신청 시 선납토록 되어 있는 공사비를 일시불 납부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건축연면적이 85m²이하의 건물인 경우 계량기 구경이 13mm 이하의 단독주택과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 공동주택에 대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분할납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급수를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물 소유자의 수탁 공사비의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확대 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됨.